

제 2 장 운 영

제7조 (입소정원 및 모집방법)

1. 입소대상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요양등급 1~5등급자중 시설급여가 가능한자로 한다.
2. 입소정원은 27인으로 한다.
3. 모집방법
 - ①모집대상:가-일반이용자(노인장기요양등급 1~5등급자중 시설이용가능자)
나-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의한 부부 특례입소자
다-기초생활 수급자.
 - ②모집방법:가-지역사회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홍보를 통해 모집한다
나-가족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한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제8조 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

본원에 입소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급여제공계약을 작성한후 본인 및 신원인수인(또는 대리인)의 서명과 요양원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.

1. 계약기간: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 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②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2. 계약목적: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.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,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.
4. 입소구비서류
 - ①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
 - ② 건강진단서 1통(병명 및 전염성 질환여부)
 - ③ 주민등록등본
 - ④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 신분증/인장
 - ⑤ 의료보호 및 건강보험증
 - ⑥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(필요자)
- 5.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 - ① 신원인수인(보호자/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 - 가)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 - 나)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 - 다)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 - 라)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있고,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전원을 할 수 있는권리.
 - ② 신원인수인(보호자/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- 가)입소자에 관한 건강,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 - 나)입소자의 월 이용료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 - 다)인적사항등의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
라)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
마) 입소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및 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기관의 설비 및 집기등의 파손,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.

제9조 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서비스의 내용 : 일상생활 지원서비스, 의료지원 서비스, 재활지원 서비스, 심리정서지원 서비스, 종교활동 서비스, 영양·급식지원 서비스, 입소자 관리 서비스, 가족기능강화 서비스, 지역사회 복지서비스
2. 서비스의 비용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수납가능한 비급여 항목외 비용은 임의로 수납 할 수 없다. 단 입소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의 요구에 의한 물품 및 서비스제공의 실비는 수납 할 수 있다.
3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 - ① “을”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. 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 - ② “을”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.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4. 입소자의 의무
 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 -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 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 -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제10조 (계약의 해지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4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6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7.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제11조 (이용료 및 비용 변경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.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.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.